

거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

의안 번호	2022-39
----------	-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1. 제안 이유

경상남도에서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하여 조례 제정을 요청함에 따라 자원순환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, 정의 및 기본방향을 정함(안 제1조~제3조)
- 나. 군수, 사업자, 군민의 책무를 정함(안 제4조~제6조)
- 다. 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정함(안 제7조)
- 라.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을 정함(안 제8조)
- 마. 품질표지 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를 정함(안 제9조)
- 바. 교육 및 홍보를 정함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·제28조,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, 「자원순환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: 2023년도 예산 150백만원 확보 예정
- 다. 합 의: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범위 검토
- 라. 기타사항
 - 1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 - 2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: 2022. 2. 7.~2. 28.
 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 - 3) 비용추계서: 붙임
 - 4)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절한 처분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「자원순환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(기본방향) 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, 사업자, 거창군민(이하 “군민”이라 한다) 등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.

1.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
2. 발생한 폐기물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사용하고,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에너지 회수 등 자원이 최대한 순환되도록 할 것
3.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절하게 처분할 것

제4조(군수의 책무) ① 군수는 거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의 경제적·자연적·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사업자, 군민, 단체 등이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.

제5조(사업자의 책무) ① 사업자는 제품의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포장재 등을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·유통·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② 사업자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.

제6조(군민의 책무) ① 군민은 일상생활 및 소비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재사용·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.

② 군민은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쉽게 순환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.

제7조(집행계획 수립)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 이 경우 「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.

제8조(자원순환 활성화 사업) ① 군수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순환 영역의 발굴·보급
2. 자원순환 육성·지원
3. 자원순환 인식 확장
4.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무료 지원
5.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 군수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·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9조(품질표지 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) ①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0조(교육 및 홍보) ① 군수는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순환

관련 단체 및 군민 등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군민 등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하는 자에게 행정·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거창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가. 비용발생 요인: 다회용기 세척시설 구축 1식
- 나. 관련 조문: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(안 제8조)

2. 비용추계의 결과

지원액 \ 연도	2023년도
군비	150백만원

국비·군비 매칭비율=1:1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- 1. 2023년도 필요 총예산 300백만원 중 군비 150백만원
- 2. 세척전용 건물 신축: 100백만원
 - 가. 설계비: 10백만원
 - 나. 공사비: 90백만원
- 3. 세척시설 설치 및 용기 구입: 50백만원
 - 가. 식기세척기, 살균기 구입비: 12.5백만원
 - 나. 실내공사비: 25백만원
 - 다. 다회용기 구입비: 12.5백만원

작성자 환경과장 신종호